

英國의 電氣通信料金政策과 서비스料金 動向

主任研究員 朴 基 漢

1980년대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전기통신산업정책은 기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복점에 의한 경쟁 및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격상한규제로 특징지워진다. 영국의 이러한 정책은 오늘날 BT의 재무구조 개선, 독점시대의 왜곡된 요금구조의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신규사업자인 Mercury를 충분히 육성하지 못하는 등의 다소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하였다.

경쟁시대에 있어서 가격결정은 궁극적으로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일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의 내용은 영국의 전기통신산업정책에 국한되고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관련 정책을 검토·수립해 나갈 때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目 次

I. 머리말

II. 電氣通信料金規制 現況 및 展望

1. 規制機關

2. 料金規制 現況

3. 料金規制 展望

III. 電氣通信事業者의 料金戰略

1. BT

2. Mercury

IV. 맺음말

I. 머리말

영국은 1980년대에 들어 전기통신서비스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와는 달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써 가격상한규제를 실시해 왔다. 당시, 이 규제방식은 독점사업에 대해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온 공정보수율규제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 규제방식으로 알려져 타 국가의 관련 업계 및 규제기관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에 이르러 이 방식은 경쟁체제에서 시장기능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방법의 하나로 평가되어 미국에서도 도입되는 등 전기통신요금규제의 선진수법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본고는 먼저, 그 동안 영국에서 시행된 가격상한 규제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는 산업구조하에서 향후의 규제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 규제정책하에서 경쟁에 직면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및 요금 전략과 이에 대항한 신규사업자의 대응전략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영국의 전기통신산업 및 규제정책의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電氣通信料金規制 現況 및 展望

1. 規制機關

영국의 전기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무역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전기통신부(Telecommunications Division)와 독립기관인 전기통신청(Office of Telecommunications ; OFTEL)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산업성의 전기통신부는 전기통신정책전반에 관한 정책수립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부여한다. BT(British Telecommunications), Mercury(Mercury Communications Ltd.), Hull시영회사 등 공중통신사업자들은 무역산업성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았다.

OFTEL은 1984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84)에 의해 설립된 독립규제기관으로서 OFTEL 청장은 임기중에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조직은 정부의 어느 성에도 귀속되지 않는다.¹⁾ OFTEL은 무역산업성에서 부여한 BT, Mercury, Hull시영회사, Cellnet사 및 기타 공중통신사업자의 면허를 감시·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면허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Telecommunications Act 1984의 Section 55 참조.

OFTEL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²⁾

첫째, 전기통신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면허조건을 준수시키는 것이다.

둘째, 면허조건외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합의하여 면허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독점합병위원회(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 MMC)에 의뢰하여 면허변경을 행한다.

2. 料金規制 現況

가. BT 민영화 이전의 요금규제³⁾

영국은 전화요금에 대해 미국과는 달리 우전성시대부터 공사시대까지는 사업체가 자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해 왔다. 당시의 요금결정절차는 정부가 정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사업체가 요금안을 작성하고 소비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정부의 요금설정기본방침은 모든 국영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투자자본에 대해서 일정액 이상의 이익을 계상하고, 요금체계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비자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구하여 참고로 한다는 정도였다.

BT의 민영화이전, 구체적인 요금개정절차는 BT가 사업전체의 수지를 감안하여 요금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전국이용자협회 및 물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그 의견을 듣고, 요금표를 산업성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의 요금인가와 달리 실질적으로 BT가 독자적으로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당시 BT에 관한 정부의 관여는 직접적으로는 자금조달과 총재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경영에 관해서는 다른 정부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침이 경영목표로 나타나는데 그치고 있었다. 다액의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

2)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Communications-The Most Comprehensive Guide To the UK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acmillan publishers Ltd., 1986, pp.3-4 참조.

3) 直江 重彦, 「BT의 電話料金と競争戰略」, 『テレコミュニケーション』, 1992. 7, p.70 참조.

는 BT로서는 서비스의 확충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영상의 최대의 문제로 되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 정부기업에 배분되는 자금조달방식아래에서 BT는 충분한 자금할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BT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전화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조달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전기통신사업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전화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BT의 전화요금은 우전성에서 우전공사로 개조(1969년)되어도 기본적으로 큰 변화없이 전체적으로 수지가 일치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또,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내전화서비스요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적자분을 시외전화서비스나 국제전화서비스의 수익으로부터 횡적 상호보조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금구조는 1973년의 요금체계조정 및 요금인하로 다소 개선되었다. 1973년, BT는 시외전송코스트에서 거리에 따른 비용격차가 적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 때까지의 3단계의 거리구분을 56Km를 구분으로 하는 2단계로 고치고, 대폭적으로 장거리통화요금을 인하했다.

그 후, 몇번의 요금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요금체계 자체에 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이다. 이 때 BT는 시내통화에도 시외통화와 마찬가지로 피크시간대, 표준시간대, 할인시간대의 3구분을 도입하여, 단위요금으로 피크시간대 2분, 표준시간대 3분, 할인시간대 9분이라는 요금체계를 설정하였다. 이 때의 요금개정으로 시내외간 월근격차는 12배 수준으로 낮아짐으로써 1973년의 15배에 비해 다소 개선되게 되었다.

나. BT의 민영화와 새로운 요금규제방식의 도입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전기통신사업은 1969년 발족된 우전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독점임과 동시에 국영인 관계로 노동쟁의에 의한 서비스의 저하나 경영의 악화가 현저해져 그 개혁이 커다란 정치적 과제로 되고 있었다. 이에 보수당은 1970년대말에 행해진 선거에서 우전공사의 개혁을 하나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1979년 출범한 대처정권은 전기통신산업에 대한 경쟁도입방침을 결정하고

1981년에 이르러 영국전기통신공사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라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우편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분리가 실현되었다. 아울러 경쟁도입 및 자유화에 대한 권한이 산업성장관에 부여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게 되었다.⁴⁾

종래 우전공사에 의해 주관되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장비공급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동법에 따라 1981년 10월 창설된 영국전기통신공사(BT)에 이관되었으며, 동시에 BT의 통신망을 이용한 민간기업의 VAN사업과 민간에 의한 전기통신시스템의 건설·운용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2월 Mercury에 대한 사업면허가 산업성장관에 의해 부여됨으로써 BT망의 이용과 함께 자체망의 구축으로 전국적인 통신망을 확보하여 BT에 대한 경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⁵⁾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의 자유화 및 경쟁도입정책은 1984년 전기통신법의 제정에 따라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동법에 따라 BT에 새로운 면허가 부여됨과 동시에 BT주식의 50.2%가 민간에게 매각됨으로써 BT의 민영화가 실현되었다.

BT의 민영화 당시, 영국의 전기통신시장은 경쟁이 제고되고 있었지만 가까운 장래까지 BT가 여러 서비스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남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측면 등 요금규제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각계의 자문을 구해 적절한 규제제도에 관한 작업을 시작했다.⁶⁾

영국정부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Littlechild 교수가 제안한 가격상한규제방식(Price-Cap Regulation)을 BT의 민영화 이후의 요금규제원칙으로 결정하

4) 산업성은 1983년 6월 무역산업성으로 개칭됨.

5)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Competition and Cho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 the 1990s - A Consultative Document*,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HMSO), 1990. 11, p.11 참조.

6) 당시 요금규제방안으로 검토된 것은 공정보수율규제, Alan Walters 교수의 Output Related Profits Levy 및 Littlechild 교수의 가격상한규제방식 등이다. 각 방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엄명배, 서정원, 서동진, 『전기통신요금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89. 12., pp.82-83 참조.

였다.⁷⁾ Littlechild 교수가 제안한 가격상한 규제는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 ; PRI)에서 생산성향상률을 뺀 것($RPI - X\%$)을 요금인상의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 규제방식을 BT에게만 적용하기로 하고, BT의 경쟁사업자인 Mercury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적으므로 시장에서 가격형성능력이 없다 하여 그 요금설정에는 공적인 부과를 하지 않고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가격상한방식의 적용현황

민영화와 함께 무역산업성으로 부터 부여받은 BT의 면허 제24조에는 요금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⁸⁾ BT면허 제24조는 요금규제의 대상, 시행기간, 요금규제공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T에 적용되는 가격상한 규제는 BT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스켓으로 묶어 이에 대한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BT가 제공하는 몇 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바스켓의 가중평균요금 인상률을 「 $RPI - X\%$ 」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서비스에 가격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스켓내에서는 이 공식을 준수하는 한 요금결정의 재량권이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BT가 전기통신법에 의해 새로운 면허를 부여받은 이래 현재까지 BT에 적용된 가격상한 규제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4년 8월-1989년 7월까지 5년간에 대해서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료, 시내통화 및 시외통화료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국제통화, 공중전화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⁹⁾ 규제대상서비스에 대해 「 $RPI - X\%$ 」를 적용함에 있어서 X값은 그간의 BT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3%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시내전화요금

7) Littlechild교수의 보고서 내용은 Stephan C. Littlechild, "Regulation of British Telecommunication's Profitability",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1983. 2, pp.6-8 참조.

8)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TEL, *Licence gra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to British Telecommunications under Section 7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84*,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HMSO), 1987. 9, pp. 51-53 참조.

9) (株)情報通信總合研究所(編), 『情報通信年監 '92』, 1991. 12, p.708 참조.

〈表 1〉 BT에 대한 요금규제 현황

기 간	'84-'89.7	'89.8-'91.7		'91.8-'93.7	
규제대상 서비스 (바스켓)	기본료 시내외통화료	기본료 시내외통화료 수동통화료 번호안내료	전용회선료 (국내)	기본료 시내외통화료 수동통화료 번호안내료 국제통화료	전용회선료 (국내, 국제)
요금상한	RPI-3%	RPI-4.5%	RPI-0%	RPI-6.25%	RPI-0%
자주규제 (기본료, 설비료)	RPI+2%	RPI+2%		RPI+2% RPI+5% ^{註)}	

註) 사무용복수회선가입자에 대해 적용됨.

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료 및 설치비에 대해 자주적인 규제으로써 「RPI+2%이내」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1989년 8월-1993년 7월까지 4년간에 대해서 OFTEL은 BT의 기본료, 시내통화료 및 시외통화료, 수동통화료(유료화후의 번호안내료도 포함) 등에 대해 요금상한을 「RPI-4.5%」로 하고, 국내전용회선료에 대해서는 「RPI-0%」로 설정하는 등 이전 기간에 비해 요금규제를 크게 강화하였다.¹⁰⁾ 이와 같은 배경에는 BT의 경영합리화의 불철저, 재무구조의 호전, 서비스품질의 악화 등의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989년의 OFTEL의 이와 같은 결정은 1991년 7월까지만 적용되고, 1990년 11월부터 무역산업성과 OFTEL이 공동으로 검토한 복점체제 재검토의 결과로 1991년 8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규제공식이 적용되게 되었다.¹¹⁾ 변경된 주요내

10) OFTEL, "BT Price Change", OFTEL NEWS, Issue No. 14, 1989. 11, p.11 참조.

11) 무역산업성과 OFTEL은 복점체제의 재검토(The Duopoly Review)와 관련하여 1990년 11월 13일, *Competition and Cho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 the 1990s-A Consultative Document*-란 녹서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1년 3월 5일 *Competition and Choice: Telecommunications in the 1990s*-란 백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 1991년 7월 24일 BT 및 Mercury의 면허가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BT는 새로운 면허에 의해 요금규제내용도 바뀌게 되었다.

용은 국제통화료가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기본료, 시내외 및 국제통화료 등에 「RPI-6.25%」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 또, 전용회선 바스켓에 국제전용회선이 추가되어 「RPI-0%」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기본료 및 설치비와 관련하여 자주적 규제로서 「RPI+2%이내」를 그대로 적용하되 사무용복수회선가입자에 대해 「RPI+5%이내」로 하기로 하였다.¹²⁾

3. 料金規制 展望

현재 BT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상한공식은 1993년 7월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OFTEL은 금년초부터 향후 적용될 BT의 요금규제원칙을 검토해 왔다.

OFTEL은 지난 1월 30일, BT의 요금규제와 관련하여 'The Regulation of BT's Price' 및 'BT's Cost of the Capital' 등 2개의 자문문서를 발송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OFTEL의 자문문서에는 많은 검토사항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 1993년 7월 이후에도 현재의 요금규제를 계속하여야 하는가?
- 요금규제대상으로 BT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다른 영역을 커버하도록 확대해야 하는가?
- 「RPI-X」의 공식이 채택된다면 X의 수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 바스켓의 수를 둘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 바스켓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서비스의 가격상한을 두어야 하는가?
- BT에게 현재의 원가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가?
- BT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The Duopoly Review*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OFTEL, *OFTEL NEWS*, Issue No. 17, 1991. 3, p.1 및 p.3 참조.

BT 및 *Mercury*의 면허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OFTEL, *OFTEL NEWS*, Issue No. 18, 1991. 9, p.1 및 p.3 참조.

12) OFTEL, *OFTEL NEWS*, Issue No. 18, 1991. 9, p.1 및 p.15 참조.

13) OFTEL, *OFTEL NEWS*, Issue No. 20, 1992. 4, pp.1-2 참조.

- 요금의 재균형(rebalancing)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¹⁴⁾
- 중위주택용가입자의 요금부담액(Median Residential Bill)의 증가한도를 두어야 하는가?
- BT에게 상호접속에 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가?

OFTEL은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각계로 부터 자문을 구한 후 지난 6월 9일, 향후 BT에 대한 규제내용을 제안하였다. BT의 요금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가격상한공식〉

기본료, 시내외통화료, 국제통화료에 대해 현재의 RPI-6.25%에서 1993. 8. 1-1997. 7. 31까지의 4년간에 대해 RPI-7.5%를 적용한다.

〈규제범위〉

자문문서에 대한 회답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요금규제 대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단, 전화기의 기기사용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RPI 이내로 하는 별개의 규제를 제안한다.

〈기본료의 인상한도〉

현재 기본료에 대해서는 RPI+2%(복수회선 사무용 가입자는 RPI+5%)의 별개의 인상한도가 설치되어 있다. BT는 최초의 2년간에 대해서는 RPI+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BT의 요구는 요금체계의 재균형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로 차기 요금규제기간중에는 그 인상한도를 RPI+2%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개별 요금인상의 한도〉

개별 요금의 대폭적인 변동을 막기 위하여 교환서비스 바스켓(기본료, 시내외 통화료, 국제통화료 등)내의 기타의 모든 요금의 인상한도를 RPI로 할 것을 제안한다.

14) 이는 전형적인 주택용가입자의 분기당 기본료(Quarterly rental)에 대한 것이다.

15) OFTEL, *OFTEL NEWS*, Issue No. 21, 1992. 8, pp.1-2 및 情報通信總合研究所, 『海外電氣通信』, 1992. 8, pp.41-43 참조.

〈전용선〉

전용선요금에 대해 개별 가격상한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며, 전용선 바스켓내의 모든 요금의 인상한도를 RPI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OFTEL의 규제내용은 피규제자인 BT와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BT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독점합병위원회(MMC)에 자문을 구하여 이것을 기초로 확정된다.

Ⅲ. 電氣通信事業者의 料金戰略

1. BT

가. 경쟁도입과 요금전략¹⁶⁾

1980년대에 들어 전기통신서비스분야에 경쟁도입이 이루어지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가시화되자 BT는 경쟁체제에 대응한 요금전략을 검토하였다.

당시 BT의 요금체계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내외간 원근격차가 크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용구조에 대응한 요금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BT는 비용에 입각한 요금설정을 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자에 의한 크립스키밍이 발생하여 시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별 비용과 그것에 입각한 요금설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1년 11월의 요금개정시, BT는 기본료(quarterly rental) 및 설비료(connection charges)의 인상과 함께 시내통화요금중 특히 표준시간대의 요금을 대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요금체계의 재균형(rebalancing)을 단행했다. 또한, 그 다음해 봄에도 기본요금 및 설비요금을 인상하고, 단위요금(unit fee)¹⁷⁾을 4.3펜스에서 4.5펜스로 인상했다. 동시에 Mercury가 서비스제공을 계획하고 있던 주요도시간

16) 直江 重彦, 「BT의 電話料金と競争戰略」, 『テレコミュニケーション』, 1992. 7, p.71-72 참조.

17) BT의 전화요금체계는 1단위요금당 통화시간을 거리별로 정한 칼슨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통화서비스에 대해 저비용구간(Low cost routes)으로 설정하여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56Km이상의 시외통화구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인하했다.

1984년, BT의 민영화와 함께 BT에 대한 요금규제 방식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기본요금과 시내 및 시외통화요금에 관해 가격상한규제방식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BT로서는 요금체계의 리바란싱이 더 용이해졌다.

민영화 후, 1986년 및 1987년에는 연속해서 기본요금과 설비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시내통화의 야간 할인요금을 인상하고, 시외통화요금에 대해서는 인하하였다.

1990년 9월 요금개정시, BT는 기본요금과 설비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통화요금의 단위요금을 4.4펜스에서 4.2펜스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시외통화료에 대해서는 소폭으로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수차례의 요금개정의 결과로, BT의 전화요금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에 이르러 명목이기는 하나 1980년도에 비해 기본요금에서 2배정도, 설비료에서 3배정도, 시내통화요금은 표준시간대에 2.5배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Km이상의 구간의 요금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외구간에 대한 요금은 저비용구간의 할인요금까지 감안할 때 그 인하폭은 더 크게 될 것이다. 또한, 시내외간 요금의 원근격차는 2.56배의 수준을 보여 당시의 12배에서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요금체계의 리바란싱 결과, BT의 수익구조가 크게 변하게 되었으며, BT의 이익의 대부분이 시내전화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BT의 서비스별 원가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 평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경쟁사업자인 Mercury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진입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6%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의 원천을 신규시장진입이 곤란한 시내전화서비스부문으로 옮긴다는 BT의 요금전략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만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表 2〉 BT의 요금변화 추이

	1980년	1984년	1986년	1987년	1990년	1991년
기본료(£) ^{주)}						
주택용	38.00	48.00	60.60	55.80	68.52	73.84
사무용	45.00	67.00	94.00	90.20	111.00	119.60
설비료(£)						
주택용	65.00	70.00	95.00	105.00	129.26	139.36
사무용	75.00	85.00	105.00	115.00	141.65	152.75
단위요금(펜스)	4.0	4.7	4.4	4.4	4.2	4.2
시내통화(초)						
피크시	120	90	60	60	60	60
표준시	180	120	90	85	85	85
할인시	540	480	360	240	240	240
56Km이내(초)						
피크시	30.00	30.00	25.70	25.70	27.00	27.00
표준시	45.00	45.00	34.30	34.30	36.15	36.15
할인시	144.00	144.00	100.00	100.00	82.25	82.25
56Km이상(초)						
피크시	12.80	12.80	18.00	18.00	19.20	19.20
표준시	18.00	18.00	24.00	24.00	25.60	25.60
할인시	48.00	48.00	45.00	45.00	39.90	39.90
저비용구간(초)						
피크시	16.00	16.00	22.50	22.50	23.95	23.95
표준시	22.50	22.50	30.00	30.00	32.00	32.00
할인시	60.00	60.00	60.00	60.00	53.00	53.00

註) 분기당 기본료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임.

資料 : 直江 重彦, 「BT의 電話料金と競争戰略」, 『テレコミュニケーション』, 1992. 7, p.71 표 재구성.

나. 전화서비스요금 현황

BT의 전화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요금구성요소는 가입시의 설비료(connection charges)와 매 분기마다의 기본료(quarterly rental) 및 통화에 따른 통화료(inland telephone call charges)로 구성되고 있다.

1992년 7월 1일 현재, 신규가입시 설비비는 주택용의 경우 139.36파운드이며, 사무용인 경우 152.75파운드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한 분기당 기본료는 주택

용의 경우 18.46파운드, 사무용의 경우 29.90파운드로 설정되어 있다.

〈表 3〉은 1992년 7월 1일 현재, 거리별 통화요금을 나타낸 것이다. BT의 통화요금은 단위요금에 정해져 있고, 이 단위요금으로 거리단계별, 이용시간대별로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과금주기는 이 통화시간이 한단위 경과될 경우 1도수가 추가되게 된다. 적용되는 단위요금은 분기당 통화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용자선택서비스를 받지 않는 일반주택용가입자의 경우 분기당 통화량이 2,381통화 이하일 경우 4.2펜스, 2,382-6,140통화까지 3.99펜스, 6,141통화 이상일 경우 3.86펜스가 적용된다. 사무용이용자선택서비스를 받지 않는 일반사무용가입자의 경우 분기당 통화량이 2,381통화 이하일 경우 4.2펜스, 2,382-6,140통화까지 3.99펜스, 6,141-12,617통화까지 3.86펜스, 12,618통화 이상일 경우 3.82펜스가 적용된다. 거리구분은 시내통화, 56Km를 기준으로 한 2단계의 시외통화 및 저비용구간으로 되어 있다.

〈表 3〉 BT의 국내통화료 현황(1992. 7. 1 현재)

(단위 : 초 / 4.2펜스)

	할인시	표준시	피크시
시내통화	220	80	57.5
56Km 이내	80.80	36.15	27.0
56Km 이상	37.95	25.6	19.2
저비용구간	50.35	32.0	23.95

註) 피크시는 국경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의 09:00-13:00, 표준시는 08:00-09:00 및 국경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의 13:00-18:00, 할인시는 피크시 및 표준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이 적용된다.

資料 : Eurodata Foundation, *Eurodata Foundation Databook Tariffs 1992*, 1992. 7, p.UK-BT 1 참조.

한편, BT는 주택용가입자에 한해 저이용자를 위한 선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용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분기당 기본료는 일반 이용자의 절반 수준인 9.23파운드가 적용되며, 30통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31통화 이상의 경우 150통화까지는 15.85펜스의 고율의 단위요금이 적용된다. 151통화 이상의 통화에 대해서는 4.2펜스가 적용된다.

2. Mercury

가. Mercury의 전화요금체계

Mercury는 영국에서 BT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한 공중통신사업자이다. BT에 대항하는 Mercury의 전화서비스의 종류는 2100서비스, 2200 및 2300서비스가 있다.¹⁸⁾

2100서비스는 Mercury망에 직접 연결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날로그방식의 2100표준서비스와 디지털방식의 2100프리미엄서비스가 있다. 2100표준서비스는 유선에 의한 접속과 마이크로웨이브 무선에 의한 접속이 있으며, 접속회선의 종류에 따라 기본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2100프리미엄서비스는 모두 유선에 의해 접속되고 있으며, 접속회선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료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表 4>는 2100서비스의 기본료(연간) 및 설비료(Installation charges)를 나타낸 것이다. <表 3>과 비교할 때, Mercury의 기본료는 BT의 사무용가입자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Mercury의 설비요금은 BT의 그것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

<表 4> Mercury 2100서비스의 기본료 및 설비료(1992. 4. 1 현재)

	기본료(년간, £)	설비료(£ /회선당)
2100표준서비스		
일반회선	120	112
Hotline	208	185
과금명세서 포함(일반회선)	145	122
2100프리미엄서비스	114	92

註) 2100프리미엄서비스의 기본료는 회선당 년간요금이며, 설비료는 첫 30회선까지 92파운드가 적용되며 그 이상 추가 1회선당 54파운드가 적용된다.

資料 : Eurodata Foundation, *Eurodata Foundation Databook Tariffs 1992*, 1992. 7, p.UK-MCL 3 참조.

18) Mercury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Barclays de Zoete Wedd, *UK Telecommunications: Cable and Wireless*, 1988 및 李鳳浩, 朴基漢, 崔重凡, 『공중통신사업자간 회선상호접속 및 요금분배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89. 12, pp.56-60 참조.

Mercury는 가입자의 획득을 위하여 설비료 및 기본요금에 대해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설비요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12개월간 분할지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접속후 1년간 지불을 유예시켜 주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2100표준서비스에 대해서 판매촉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설비요금의 50%를 할인해 준 바 있다.

2100서비스의 통화요금은 1분당 요금으로 <表 5>와 같다. 각통화마다 요금은 기본적으로는 통화시간을 0.1초단위로 측정하여 과금한다. 그리고 각 통화에 대해서는 최저과금요금을 적용하고 있다.¹⁹⁾ 2100서비스에 적용되는 통화당 최저과금요금은 거리단계에 관계없이 3펜스가 적용된다.

<表 5> Mercury 2100서비스의 국내통화료(1992. 4. 1 현재)

(단위 : 펜스 /1분)

	피크시	표준시	할인시
56Km 이상 저요금구간	9.60	7.11	4.80
56Km 이상 구간	9.78	7.30	5.20
56Km 이내 저요금구간	8.72	6.47	3.40
56Km 이내 구간	8.75	6.52	3.40
시내구간(tire 5)	4.08	3.00	1.34
시내구간(tire 6)	7.10	5.40	2.60

註 1) 피크시는 국경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의 09:00-13:00, 표준시는 08:00-09:00 및 국경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의 13:00-18:00, 할인시는 피크시 및 표준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이 적용된다.

註 2) 시내구간(tire 5)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의 6페이지를 참고할 것.

資料 : Eurodata Foundation, *Eurodata Foundation Databook Tariffs 1992*, 1992. 7, p.UK-MCL 6 참조.

Mercury는 2100서비스에 대해 대량이용자를 위해 대량이용자프로그램(Frequent Caller Programme; FCP)을 설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가입자는 회선수에 관계없이 국내통화의 경우 3개월에 450파운드의 기본료를, 국

19) 최저과금요금은 11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Eurodata Foundation, *Eurodata Foundation Databook Tariffs 1992*, 1992. 7, p.UK-MCL 4 참조.

초점

제통화를 포함할 경우 1,950파운드의 기본료를 내면된다. 국내통화의 경우 통화료는 <表 6>과 같다.

<表 6> 2100서비스의 FCF 국내통화료(1992. 4. 1 현재)

(단위 : 펜스/1분)

	피크시	표준시	할인시
56Km 이상 저요금구간	9.41	6.97	4.80
56Km 이상 구간	9.58	7.15	5.20
56Km 이내 저요금구간	8.55	6.34	3.40
56Km 이내 구간	8.58	6.39	3.40
시내구간(tire 5)	4.06	2.98	1.34
시내구간(tire 6)	7.10	5.40	2.60

註) 적용시간대는 2100서비스와 동일함.

資料 : Eurodata Foundation, *Eurodata Foundation Databook Tariffs 1992*, 1992. 7, p.UK-MCL 6 참조.

2200 및 2300서비스는 BT가입자에 대한 중계서비스이다. 2200 및 2300서비스는 할인시간대종류, 최저과금요금, 저비용구간, 거리단계구분, 기본료의 면제 등에 있어서 2100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통화요금의 경우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0서비스에 비해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시내통화에 한해 최저과금요금이 7펜스로 2100서비스에 비해 2배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

<表 7> 2200 및 2300서비스의 국내통화료(1992. 4. 1 현재)

(단위 : 펜스/1분)

	피크시	표준시	할인시
56Km 이상 저요금구간	10.60	8.18	3.62
56Km 이상 구간	11.00	8.35	3.95
56Km 이내 저요금구간	9.70	7.40	2.45
56Km 이내 구간	9.90	7.45	2.50
시내구간	9.70	7.40	2.45

註) 적용시간대는 2100서비스와 동일함.

資料 : Eurodata Foundation, *Eurodata Foundation Databook Tariffs 1992*, 1992. 7, p.UK-MCL 20 참조.

2200 및 2300서비스도 2100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량이용자를 위한 할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할 경우 2200서비스는 3개월에 60파운드(사무용가입자) 또는 5파운드(주택용가입자)의 기본료를, 2300서비스는 3개월에 5파운드의 기본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할인 서비스의 국내통화료는 <表 8>과 같다.

<表 8> 2200 및 2300서비스의 FCP 국내통화료(기본료 £ 60의 경우)

(단위 : 펜스/1분, 1992. 4. 1 현재)

	피크시	표준시	할인시
56Km 이상 저요금구간	9.60	7.15	3.60
56Km 이상 구간	9.90	7.65	3.90
56Km 이내 저요금구간	9.00	6.65	2.40
56Km 이내 구간	9.10	6.85	2.45
시내구간	9.00	6.65	2.40

註) 적용시간대는 2100서비스와 동일함.

資料 : Eurodata Foundation, *Eurodata Foundation Databook Tariffs 1992*, 1992. 7, p.UK-MCL 21 참조.

나. Mercury의 시장전략 및 요금전략²⁰⁾

Mercury의 기본적 시장전략은 주요도시간 통화가 많은 대량이용자를 획득하는 데에 두어 왔다. 이에, Mercury는 통화요금을 BT보다 저렴하게 설정하고 특히 대량이용자를 위한 특별할인제도를 강구해 왔다.

이와 같은 시장전략을 구사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로, 적은 투자로 가능한 많은 수익을 획득하는데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대량이용자를 통한 크립스키밍을 노린 점을 들 수 있다. 즉, 영국에서는 장거리서비스의 거리구분이 56Km를 기준으로 2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외통화료에 대한 원근격차가 2.6배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장거리서비스에 대한 크립스키밍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Mercury는 크립스키밍의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른 요금전략을 구사하였다고 하겠다.

20) 直江 重彦, 「マーキュリー社の 電話料金」, 『テレコミュニケーション』, 1992. 9, pp. 77-79 참조.

Mercury는 시장진입 당시, BT의 장거리전화요금이 그 비용에 비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 통화량이 많은 주요 도시간의 통화서비스제공을 그 수익원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BT의 요금개정에 의해 저비용구간이 설정된 새로운 요금체계가 설정됨으로써 상기와 같은 시장 및 요금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Mercury의 요금체계는 대량이용자가 Mercury의 네트워크에 직접 가입할 경우 BT망에 가입하는 것 보다도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소규모이용자나 주택용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요금체계도 갖추고 있으나, 그 편익이 대규모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Mercury망에 가입할 유인을 크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Mercury는 소규모이용자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서비스나 장거리전화서비스에 특화된 요금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Mercury의 시장전략중 또 하나의 특징은 광케이블과 디지털교환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장전략은 디지털회선접속 가입자에게 아나로그회선접속과 같은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고도의 통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량이용자를 획득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 디지털회선접속은 ISDN서비스는 아니지만 데이터전송이나 화상전송, 공중회선을 이용한 LAN구축 등에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전략도 아직까지 커다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디지털단말가격이 아직 고가이고, LAN구축에 대한 지원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V. 맺음말

영국의 전기통신산업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정부의 강한 통제하에서 매우 완만하게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다. 영국은 1980년대를 통하여 기본서비스분야의 경우 BT와 Mercury의 복점경쟁체제만을 인정하여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기본서비스분야를 포함한 전서비스분야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1984년, BT의 민영화와 함께 기본서비스분야에 있어서 복점체제에

의한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경쟁적 시장을 일정 단계까지 육성하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BT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에 대해 Littlechild 교수가 제안한 가격상한규제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가격상한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이 규제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였다. 장점으로는 먼저, 이 규제방식이 이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규제이므로 이로 인해 기업의 내부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 둘째로 이 제도는 투자와 고용간에 중립적이므로 공정보수율규제에서 일어나는 과잉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 OFTEL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제방식은 규제관리상 편리하다는 점 등을 경험하였다. 반면에, 비용절감이 내부효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BT의 경영형태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OFTEL은 그 동안의 시행결과에 근거하여 이 제도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T는 경쟁에 직면하여 가격상한규제라는 꽤 자유도가 있는 요금규제제도가 적용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진입에 대항한 효과적인 요금설정이 가능했다. 즉, BT는 이 규제하에서 비교적 느린 속도로 독점시대에 형성된 요금이나 서비스의 왜곡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결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시내외간 요금의 원근격차를 2.6배수준으로 좁혔으며 시내서비스부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요금체계의 재균형전략은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Mercury의 시장전략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규제정책이 BT의 경영개선이나 전기통신서비스의 다양화 등 BT의 민영화에서 기대된 점들을 충분히 달성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요금체제도 경쟁을 너무 의식하여 설정되어 있어 이용의 촉진이나 간편한 사용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기대되고 있는 마땅한 요금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Mercury는 경쟁이 도입된 대부분의 국가의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당초 통화량이 많은 주요 도시간 통화서비스의 제공을 시장전략으로 수립하였지만 BT의 저이용구간 설정 등 효과적인 대처로 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Mercury는 대량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의 개발 및 요금전략을 수립함으

로써 BT에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Mercury는 타국가의 신규사업자에 비해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향후, 영국의 전기통신산업은 복점체제의 재검토의 결과로 전기통신서비스전분야에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BT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가격상한 규제가 실시되고, 동시에 원가자료의 공개 등 기업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체까지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여 BT 및 Mercury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장 및 요금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